

임신기 근로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안내문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절대 금지됩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로가 허용됩니다.
- ※ 일반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일반 남성 노동자와 동일하게 1주 12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

근거조문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야간·휴일근로 금지

- 임신부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야간근로 : 밤10시~새벽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

근거조문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태아검진시간

- 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임신기간	정기건강진단 시간
임신 6개월까지	1개월마다 1회
임신 7개월에서 8개월까지	1개월마다 2회
임신 9개월 이후	1주마다 1회

근거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안내문

▶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함)의 휴가가 보장되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이어야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급여기준	월 통상임금(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30일(다태아 45일)
급여 지급 주체	사업주가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 제출
신청주기	30일 단위 또는 복직 후 일괄 청구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가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휴가종료 1년 이내에는 신청하여야 함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연구원에서 온라인 제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사용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까지 지급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근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휴직), 인사관리시행지침 제15조(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휴직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2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
3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음
4	휴직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급여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5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 입금

필요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연구원에서 온라인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세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사용기간	최대 2년(자녀 1명당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1년 기준))
단축 후 근로시간	1주일 최소 15시간 ~ 최대 35시간 근로
신청방법	단축시작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근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 x 5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신청 방법	
1	단축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2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승인
3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받음
4	단축시작 1개월 후부터 단축종료 후 1년 이내에 급여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5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금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연구원에서 온라인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시간

- 만 5세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용 불가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육아시간 사용 후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시간 대신 연가로 처리합니다.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을 사용월로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근거조문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준용)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라.특별휴가 (6)육아시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 가족돌봄제도

-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120일의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
사용기간	연간 최장 120일(분할사용 가능. 단, 1회 30일 이상 사용)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참여 및 휴업·휴원·휴교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염병, 재난 등)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3.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그 외 가족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무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휴직), 제40조(휴직기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제20조(무급휴가)

육아기 남성 근로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안내문

▶ 육아휴직

·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사용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까지 지급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근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휴직), 인사관리시행지침 제15조(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휴직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2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
3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음
4	휴직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급여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5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 입금

필요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연구원에서 온라인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세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사용기간	최대 2년(자녀 1명당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1년 기준))
단축 후 근로시간	1주일 최소 15시간 ~ 최대 35시간 근로
신청방법	단축시작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근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신청 방법

1	단축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2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승인
3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받음
4	단축시작 1개월 후부터 단축종료 후 1년 이내에 급여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5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금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연구원에서 온라인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시간

- 만 5세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용 불가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육아시간 사용 후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시간 대신 연가로 처리합니다.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을 사용월로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근거조문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준용)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라.특별휴가 (6)육아시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

▶ 가족돌봄제도

-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120일의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
사용기간	연간 최장 120일(분할사용 가능. 단, 1회 30일 이상 사용)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참여 및 휴업·휴원·휴교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염병, 재난 등)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그 외 가족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무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휴직), 제40조(휴직기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취업규칙 제18조의2(모성보호 휴가), 제20조(무급휴가)
